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개정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 1 조~제 4 조 (생략)	**제 1 조~제 4 조** (좌동)	
(신설)	**제 4 조의 2 대출계약의 철회** **※ 동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채무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내용 반영 (대출계약철회권 법제화)
(신설)	**제 4 조의 3 위법계약의 해지** **※ 동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내용 반영
제 5 조~제 21 조 (생략)	**제 5 조~제 21 조** (좌동)	
제 22 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신설)	**제 22 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신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 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약관 개선방안 의견 반영

■ 시행일 : 2021 년 03 월 25 일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여부 : 적용(단, 위법계약해지권은 기존 가입고객 미적용)